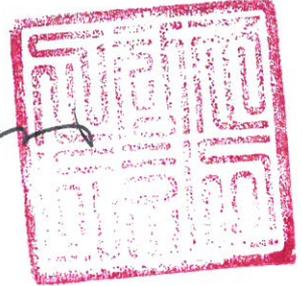


제277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0.11.18.)에서
의결된 고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고창군의회 의장

2020년 11월 18일



고창군의회 규칙 제1165호

고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고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의장, 부의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의원은 후보등록을 하여야 하고, 5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정견발표 순서는 제3조 의석배정에 따른 순서로 한다. 이 경우 선거 전일 18시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후보등록신청서를 의회사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

제67조의2 제2항 본문 중 “일괄질문·일괄답변방식의 모두 질문을 마친 후, 일문일답 혹은 일괄질문·일괄답변방식에 의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를 “일문일답 혹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의원별로 이중 어느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야 하며,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로 한다.

제67조의2 제5항 본문 중 “집행부는 답변요지서를 답변시간 48시간 전까지 해당의원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를 “의장은 일문일답의 경우에는 군정질문 개시 48시간 전(토요일·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군수에게 도착되도록 송부하여야 하고, 군수는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에는 답변요지서를 답변시간 48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 ~ ④ (생략)

⑤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군정질문서 또는 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부는 답변요지서를 답변시간 48시간 전까지 해당의원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문서가 아닌 질문요지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질문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의장은 일문일답의 경우에는 군정질문 개시 48시간 전 (토요일·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군수에게 도착되도록 송부하여야 하고, 군수는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에는 답변요지서를 답변시간 48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

-----.

(별지 서식)

후 보 등 록 신 청 서

접수번호		접 수 일 시	
성 명		생 년 월 일	
연 락 처		정견발표 여부	
주 소			
신청직위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후보 등록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창군의회 귀중

주) 신청 직위명은 1개만 선택 기재